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(송언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2110

발의연월일: 2024. 7. 22.

발 의 자: 송언석 · 이종욱 · 최은석

강명구 • 이인선 • 정희용

장동혁 • 박성훈 • 서명옥

박수민 · 이달희 · 구자근

박수영 • 박대출 의원

(14위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원의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적용하되, 그 공제액을 합친금액이 5억원 미만일 경우 5억원을 일괄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 또한 거주자의 배우자가 상속받은 경우에는 최소 5억원, 최대 30억원의배우자 상속공제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.

그러나 5억원의 일괄공제액 및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 금액은 현행법이 1997년에 개정된 이후 조정되지 않았음. 따라서 27년 동안의 물가와 자산가치 상승을 고려했을 때 국민의 실질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해당 금액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일괄공제액 및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 금액을 각각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(안 제19조제4항 및 제21조제1항

등).

법률 제 호

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9조제4항 중 "5억원"을 각각 "10억원"으로 한다.
제21조제1항 본문 및 단서 중 "5억원"을 각각 "10억원"으로 한다.
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"5억원"을 "10억원"으로 한다.
제28조제1항 단서 중 "5억원"을 "10억원"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배우자 상속공제 및 일괄공제에 관한 적용례) 제19조제4항, 제2
1조제1항, 제24조 및 제2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 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9조(배우자 상속공제) ① ~	제19조(배우자 상속공제) ① ~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
④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가	4
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	
상속받은 금액이 <u>5억원</u> 미만이	<u>10</u> 억원
면 제2항에도 불구하고 <u>5억원</u>	10억원
을 공제한다.	<u>.</u>
제21조(일괄공제) ① 거주자의 사	제21조(일괄공제) ①
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	
에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제18	
조와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제	
액을 합친 금액과 <u>5억원</u> 중 큰	<u>10</u> 억원
금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. 다	,
만, 제67조 또는 「국세기본	
법」 제45조의3에 따른 신고가	
없는 경우에는 <u>5억원</u> 을 공제한	<u>10억원</u>
다.	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제24조(공제 적용의 한도) 제18	제24조(공제 적용의 한도)
조, 제18조의2, 제18조의3, 제19	
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23조	
의2에 따라 공제할 금액은 제1	
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	

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. 다만, 제3호는 상속 세 과세가액이 <u>5억원</u>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.

1. ~ 3. (생략)

제28조(증여세액 공제) ① 제13조 저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(증여당시의 그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말한다)은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. 다만,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「국세기본법」 제26조의2제4항 또는제5항에 따른 기간의 만료로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와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② (생략)

<u>10억원</u>
1. ~ 3. (현행과 같음)
세28조(증여세액 공제) ①
<u>10억원</u>
② (현행과 같음)